

「경상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경상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용역
- 나. 사업기간 : 2026. 7. 1. ~ 12. 15.(168일간)
-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예산액 : 90,000,000원(추정가격 81,818,182원, 부가세 8,181,818원)
※ 용역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2. 입찰관련 일시 및 장소

- 가. 공고기간 : 2026. 5. 27.(수) ~ 6. 7.(일)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6. 6. 8.(월) 09:00 ~ 16:00
 - 2) 제출장소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1층) 공보담당(☎055-211-7073)
 -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다. 개찰일시 : 2026. 6. 8.(월) 17:00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필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 등록(신고)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참가 자격이 없음

5. 공동수급 : 불허

6.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같음

7.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나. 다만, 번역, 성우 녹음, 수어통역, 외국어 번역 등 개별 전문공정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인력 또는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
- 나. 협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산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바. 우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종합평가 우수자와 협상을 실시함
- 사.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일 경우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11. 입찰참가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납부서 또는 보증서 (면제대상일 경우 붙임 지급각서)
-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1부
-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대표자 직인 날인) 1부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 참여인력 총괄현황 및 이력사항 1부
- 참여인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실적증명서 및 실적집계표 각 1부
- 최근 3년간 영상 제작 실적표(실적 관련 영상 샘플) 1부
- 제안사 경영상태 증빙자료(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
- 사업수행 관련 시설·장비 현황 1부
- 정성평가제안서 11부
 - ↳ **【표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정성적 평가’ 평가 기준을 따른 제안서 제출 - 구체적 이행전략 포함
- 발표용 PPT 출력물 11부
- 시안, 스토리보드, 콘티 등
- 가격입찰서(부가세 포함) ※봉인 후 간인하여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 영상별 제작비, 촬영비, 편집비, CG·애니메이션, 음향, 번역·자막, 수어 등 세부 산출내역부

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후 별도 통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름)

나. 평가절차 : 제안설명(10분) → 질의·응답(10분) →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설명 순서는 입찰 참가서류 접수순으로 진행**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 사업자)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다. 평가방법 :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

라. 심사결과 통지 : 평가위원회 종료 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일시 개별 통보(서면 또는 전화)

1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체결

- 가. 협상진행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필요 시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
-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16.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055-211-705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055-211-217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25% 이상의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라. 입찰 참가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와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사. 기타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관계규정에 따름
- 아.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경리담당(☎055-211-7053)으로, 제안서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공보담당(☎055-211-7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5. 27.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붙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공고 2026 - 123호
- 입찰건명 :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
-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